

의안번호	2218469
의 퇴 인	김미애의원
회 답 일	2026.7.3.
추계번호	26B22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생활권공원 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45억 9,2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745억 9,200만원(연평균 149억 1,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안 제18조의2 신설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	74,592	-	-	-	-	74,592	14,918

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재정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의2 신설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생활권공원에 관한 정비계획(이하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1. 노후 공원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공원시설의 재배치 등 공간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행 접근성 개선 등 이용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권공원의 안전관리 및 이용편의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생활권공원의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와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권공원의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에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의무규정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조문	재정수반요인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18조의2 신설 (생활권공원 정비계획 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	○	• (추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구건 수립계획 사례를 바탕으로 생활권공원 정비계획 수립비용을 추산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생활권공원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년마다 생활권공원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생활권공원 정비계획 수립대상은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총 168개소이며, 생활권공원 정비계획 수

립·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산함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 부칙과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부칙 규정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권공원 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이용자 만족도 조사 포함), 주민·전문가 의견청취를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행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추산함
 - (추계방법) 생활권공원 정비계획 수립비용은 계획 수립 대상 지방자치단체 수(수량)에 지방자치단체별 평균 연구용역비 단가를 곱하여 추산함
 - (수량) 생활권공원 정비계획 수립대상인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총 168개소를 추계대상 물량으로 설정함
 - － 현재 동법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와 별개로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사항임
 - －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수립하라는 부칙규정을 고려하여 추계 첫 해인 2027년에 모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 (단가) 생활권공원 정비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유사사례 평균비용 444백만원을 적용함
 -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조회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평균 비용인 444백만원(2026년)을 적용함

[표 2] 유사사례 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년도	공고기관	사업비
2040년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2026	충청북도 청주시	520
2040년 천안시 공원녹지기본계획	2026	충청남도 천안시	563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2026	인천광역시	449
2035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2026	경기도 성남시	720
2040 울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재정비)	2026	울산광역시	220
2035 양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2026	경기도 양주시	194
평균			444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 개정안에 따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생활권공원 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물량(a, 개소)	168	—	—	—	—	—
단가(b, 백만원)	444	—	—	—	—	—
합계	74,592	—	—	—	—	74,592

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 향후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이 확정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IV. 부대의견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 향후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이 확정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